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가단5049853, 2021가단25647(반소),
2021가단5253089(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공사대금 · 계약위반에 따른 배상금 청구의
소 · 공사대금]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나9469(본소), 2022나9476(반소), 2022나94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가단5049853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B

독립당사자참가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임영택

변론종결 2022. 1. 11.

판결선고 2022. 1. 25.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4.부터 2022.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7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9. 8. 27.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 D 외 3필지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9. 8. 27.부터 2020. 4. 2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2. 2.경 공사대금을 64,000,000원 증액한 30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14.경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268,097,032원을, 2020. 2. 21. 부가가치세 26,809,703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20. 2.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0. 4. 19.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추가공사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와 원고는 도급계약과 정산합의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최종 합의하며, 다음 합의사항 중 피고가 위반한 경우 합의한 5,000만 원의 두 배인 1억 원을 조건 없이 배상한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도급계약과 정산합의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최종합의와는 별도로 진행한다.

1. 원고는 최종 계약일부터 30일 안으로 모든 공사를 완료한다.
2. 공사가 계약 및 합의한 내용대로 진행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비 3억 400만 원(부가세 별도) 이외에 5,000만 원(부가세 포함)을 별도로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
3. 위 2의 금액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두 주택 지상 2층 천정의 타설이 완료되었을 때 1차로 지급하며, 나머지 2,000만 원은 두 주택 지상 3층 천정(옥상 물탱크 등 건축 포함)의 타설이 완료되었을 때 2차로 지급한다. 단 2019. 12. 21. E 목수에게 차용해 준 230만 원은 1차 지급금액에서 차감한다. 또한 계약된 골조공사 완료 후 20일 안으로 정산처리한다.
4. 원고는 계약서 및 정산합의서에 의한 3억 400만 원(부가세 별도)과 최종 합의한 5,000만 원 이외의 어떠한 공사비도 피고에게 요청할 수 없으며, 피고도 설계변경이나 합의한 공사 이외에 추가공사를 요구할 수 없다.

라. 한편,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가설재를 임대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440232호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11. 27. “원고는 참가인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참가인은 2020. 5.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32779호로 원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9,00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가압류 결정이 2020. 5. 26.경 송달되었다. 참가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20. 12.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2547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1. 1.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5, 6호증, 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20. 4. 2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미지급한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참가인

참가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9,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참가인에게 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추심명령 이후 채무자는 소송수행권을 상실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이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2547호로 원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9,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1. 1.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본소로서 구하는 공사대금채권 중 위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부분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 중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공사대금채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26,000,000원(= 35,000,000원 -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정화조, 콘크리트 타설 등 일부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기성고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268,097,032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9,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전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추심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최종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정화조 공사, 콘크리트 타설 등 일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1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한데 대한 지체상금 내지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손해배상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이 304,000,000원에 불과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이 100,000,000원에 훨씬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100,00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5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12. 14.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중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류희현